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3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정희용・김성원・윤영석

서천호 • 박덕흠 • 강승규

신성범 • 이인선 • 박충권

박정하・백종헌・정동만

박성민 · 김예지 · 조승환

김태호 · 최은석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·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, 노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,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·도경찰청장이 어린이, 노

약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"를 "필요한 경우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도로의 횡단) ① 시·도경	제10조(도로의 횡단) ①
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	
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<u>행정안</u>	<u>필요한</u>
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	<u>경우</u>
<u>라</u>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.	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</u>
	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
	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
	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	<u>하다.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